

## 2025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제2차 선택형 사업 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선택형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4일  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### 1 사업개요

- 목적: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기술인증, 홍보 마케팅 등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 도모
- 사업기간: 협약 체결일(8월) ~ 2025. 11. 28.(금)
- 신청서 접수기간: 공고일 ~ 2025. 7. 28.(월) 13:00까지
- 지원내용: 기업 별 최대 300만원 이내
  -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
  - 선택형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
- 지원규모
  - 사업화·마케팅 지원, 지식재산권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(18,483천원)  
※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(기업 별 최대 300만원 지원)

### 2 신청자격

- 지원대상: 모집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
  - 2025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연중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
- 제외대상
  - 행정처분을 받거나,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(증명서 확인 후 선정 가능)
  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  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(개인)

- '25년에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·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  - ※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

**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**

- 2025년 진흥원에서 A아이템으로 '홍보영상 제작'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A아이템으로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불가

사업구분	사례유형	세부내용	중복여부
인증/ 특허출원	동일제품/동일인증	[A제품] KC인증 → 경기도 지원 → 진흥원 지원	중복 0 (지원불가)
	동일제품/동일특허출원	[A제품] 국내특허 → 경기도 지원 → 진흥원 지원	중복 0 (지원불가)
	동일제품/상이인증	[A제품] KC인증 → 경기도 지원 GS인증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	동일제품/상이특허출원	[A제품] 국내특허 →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	상이제품/동일인증	[A제품] ISO인증 → 용인시 지원 [B제품] ISO인증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	상이제품/동일특허출원	[A제품] 국내특허 → 용인시 지원 [B제품] 국내특허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시제품	동일제품/동일제작분야	[A제품] 목업 → 경기도 지원 → 진흥원 지원	중복 0 (지원불가)
	동일제품/상이제작분야	[A제품] 금형 → 경기도 지원 PCB제조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	상이제품/동일제작분야	[A제품] 금형 → 경기도 지원 [B제품] 금형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마케팅	동일제품/동일제작분야	[A제품] 홍보 동영상 제작 → 경기도 지원 진흥원 지원	중복 0 (지원불가)
	동일제품/상이제작분야	[A제품] 카탈로그 제작 →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	상이제품/동일제작분야	[A제품] SNS광고 → 용인시 지원 [B제품] SNS광고 → 진흥원 지원	중복 X

## 3

## 지원내용 및 한도

□ 지원내용 (2025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)

지원분야(사업화· 마케팅· 지식 재산권 및 전시회 참가비)		
홍보물 제작 (지류, 소품, 설치물 등)	홍보 영상 제작	웹페이지(PC/모바일) 제작
온·오프라인 광고	브랜드 디자인(응용물 포함)	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제작
무형 기술사업화 (앱, 콘텐츠, 온라인 서비스 등)	유형 기술사업화 (시제품, 고도화 등)	기타(기술개발 등)
국내·외 산업재산권 취득	국내·외 인증 및 시험 (인증 및 시험 접수, 대행료 등)	국내 전시회 참가
해외 전시회 참가		

□ 지원한도 : 기업별 최대 300만원 지원 (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)

-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
  - 예) A기업 :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1백만 원, 홍보용 영상 제작 2백만 원 신청 가능
  - 예) B기업 : 국내·외 산업재산권 취득 1백만 원, 홍보물 제작 2백만 원 신청 가능
-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
-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(기업부담)

□ 지원금 지급

- 지원 제외 분야 : 입주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의 국내외 여비, 대표자의 인건비 및 자산 취득비, 회계기장비 등 주력 사업아이템과 관련이 적은 분야의 비용 사용
- 협약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함
- 사업화 및 마케팅 분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업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, 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자료(전자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 등)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해당 용역업체로 지급함
- 지식재산권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 분야에 선정된 경우, 사업수행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지원기업에게 직접 지급
-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을 불인정 및 환수할 수 있음

## 4

## 추진절차

## □ 절차 및 일정

일정	절차	내용
공고일~ 7.28.	사업 공고 · 신청서 접수	· 사업신청서 접수
7.30.(예정)	심사 및 선정	· 신청자격 및 서류구비 여부 평가 ·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
8.4.(예정)	선정결과 발표	· 선정대상자 개별 연락
8.6.~11.28. (예정)	협약 및 사업 수행	· 협약 및 선택형 사업 진행
청구시	결과보고 평가 및 사업비 지급	·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청구 · 결과보고평가 후 용역업체에 사업비 지급 · 사업종료

※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심사 및 선정

- 서류평가 : 100점 배점으로 70점 이상 득점자 선정 (고득점자 순으로 선정)
- 선정방법 :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	선정평가		
	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
1	지원의 필요성	- 추진 목적 및 배경 - 추진 필요성	20점
2	기업(제품) 역량	-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- 기업 현황(인증, 특허, 유망 중소기업 등) - 사업수행능력 -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	20점
3	사업계획의 적정성	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-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-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- 활용계획의 타당성	40점
4	기대효과	- 예상 성과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 - 파급효과(산업적, 경제적 효과기여)	20점

○ 가감점

구 분		점수	비고
가점	진흥원 입주기업	+1점	
	여성기업	+1점	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
	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+1점	용인시 인증서 ※ 중복 적용하지 않음
감점	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)	5천만원 이상	-4점
		3천만원 이상	-3점
		3천만원 미만~2천만원	-2점
		2천만원 미만~1천만원	-1점
	매출액 (전년도)	300억원 이상	-4점
		300억원 미만~100억원	-3점
		100억원 미만~30억원	-2점
		30억원 미만~10억원	-1점

※ 가·감점은 선정평가(서면, 발표)시 1회에 한해 적용함.

## 5 지원신청 및 접수

### 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공고일 ~ 7. 28.(월) 13:00
- 신청방법: 용인기업지원시스템(<https://ybs.ypa.or.kr/portal.do>) 온라인 접수
- 신청서: 구비서류(직인 및 서명날인必) 스캔하여 1부의 파일(PDF)로 제출

### □ 선정발표

- 신청접수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

### □ 문 의

- 창업지원팀 (031-890-7831)

## □ 신청 시

구분	연번	구비서류	부수	비고	발급처
필수서류	1	1인 창조기업 사전진단 신청서	1부	- 기업현황표, 기업애로 세부내용, 세부내역서 등 ※ 제공서식 활용(PDF파일로 제출)	진흥원 양식
	2	입주계약서	1부	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계약서	
	3	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	각 1부	- 대표자 서명 후 제출 ※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서명	
	4	확약서	1부	- 대표자 서명 후 제출	
	5	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	1부	- 본점 소재지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
	6	(대행업체) 사업자등록증	1부	- 업태/종목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	대행업체
	7	견적서 (세부산출포함)	1부	- 대행업체 견적서(날인 필수) ※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	
	8	비교견적서	1부	- 1개 이상 비교견적	
	9	지방세 · 국세 납입증명서	각 1부	- 사업공고일 이후 서류만 유효함	정부24
해당시	10	매출 및 고용인원 증빙	각 1부	-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- 표준재무제표 증명(손익계산서) - 개인사업자 및 24년 재무제표 발급 전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-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- 4대 보험가입자 명부	관할세무서, 국세청, 홈택스, 정부24, 국민건강 보험
	11	기타 증빙자료	각 1부	- 인증서, 이노비즈, 벤처기업 등 -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- 향후 수입·구매 예정 물품거래, 수주계약서	-

※ 1 ~ 9번 서류 제출 必

□ 완료 시

구분	집행 증빙자료		
외주용역비 (시제품제작, 홍보물 제작, 기술사업화, 홈페이지 제작, 온-오프라인 광고 등)	1	선택형사업 완료보고서	- 진흥원 양식
	2	선택형사업 지원비 지급 요청서	- 진흥원 양식
	3	용역 계약서 혹은 거래명세서	- 용역업체-입주기업 간 계약서 등
	4	용역 결과보고서	- 과업지시서 대비 완료 여부를 명확히 기재
	5	본 견적서	- 본 견적 1부 제출
	6	과업지시서	
	7	검수조서	- 납품 증빙사진 포함
	8	세금계산서	- 공급자 : 용역업체 - 공급받는자 : 입주기업
	9	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	
	10	용역업체 통장사본	
	※ 완료 결과물 증빙자료 첨부 홍보영상 등 - 담당자 이메일로 동영상 파일 제출 카탈로그, 전단지 등의 홍보물 - 실물 제출 홈페이지 등 - 완료보고서에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및 링크 주소 기입		

구분	집행 증빙자료		
지식재산권 취득비	1	선택형사업 완료보고서	- 진흥원 양식
	2	선택형사업 지원비 지급 요청서	- 진흥원 양식
	3	용역 계약서	- 과업내용이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
	4	견적서	- 본 견적서
	5	출원(등록) 청구서 및 등록증	
	6	세금계산서	- 공급자 : 용역업체 - 공급받는자 : 입주기업
	7	관납료 영수증	
	8	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	- 예 : 특허법인
	9	통장사본 및 거래이체내역서	- 정산 증빙 자료
	10	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증빙 서류 등	
※ 지식재산권 출원 시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			

구분	집행 증빙자료		
전시회 참가비	1	선택형사업 완료보고서	- 진흥원 양식
	2	선택형사업 지원비 지급 요청서	- 진흥원 양식
	4	참가비 납부 영수증	
	5	세금계산서	- 공급자 : 용역업체 - 공급받는자 : 입주기업
	6	참가 증빙 결과보고	- 사진 必
	7	통장사본 및 거래이체내역서	- 정산 증빙 자료
	8	기타 전시회 참가 관련 증빙 서류 등	
	※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		

## □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

-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
-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
- 신청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기업방문을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협약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장 주소를 용인시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소로 유지해야 함(협약 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한 졸업기업 제외)
  - ※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지급 불가함
- 사업 기간에 신청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,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없음
- 협약 기간에 신청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,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회수 등 제재 가능
-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일 경우 선정취소 또는 타 사업 참여 제한 조치
-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,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
  - ※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사업 신청 및 수행 시, 결과물 이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(ex. 담당자 인건비, 급량비, 여비 등)
- 용역수행업체 선정 시 준수사항
  - 용역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 명시 확인
- 용역수행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 서류 수행사 포함 2개사 이상 제출 필수
-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지원 내용

구분	지원내용
인증	국내·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(접수비, 시험비, 대행료 등)
특허	국내·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(관납료, 컨설팅 수수료 등) ※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 ※ 지식재산권 등록은 지원 불가

- 기업 명의의 인증 및 특허출원 성과만 인정 가능(개인 명의의 성과는 인정 불가)
  - ※ 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, 개인 명의 성과 인정 가능
- 공동특허출원의 경우, 출원자 간의 관계, 권리의 지분,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, 청구서(거래내역서), 사실 확인서(권리 당사자 서명 必)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및 지원 여부 결정
- 선정평가 결과를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원범위 일부 조정 가능
- 선정기업은 지원 분야에 맞게 사업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주관기관에 사업비 신청
- '25년 11월 28일까지 사업 완료 원칙, 이후 사업비 지원 불가
- 각 기업의 사업 진행 진도율이 다를 것이므로, 기업이 해당 사업을 마치고 사업비 청구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함
-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
- 사업비는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해당 용역업체 및 지원기업으로 지급함

#### □ 사업관리

- 중간점검 또는 현장실사(필요시 외부 전문가 동행)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
- 사업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

#### □ 지원취소

-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
- 소정의 날짜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-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
- 협약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한 경우
- 협약 기간 중 주소지 이전이 확인된 경우(협약 기간 중 계약 만료로 인한 졸업기업 제외) ※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지급 불가함

- 별첨 1. 사전진단 신청서 1부.  
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 
 3. 협약서 1부.